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1

2021. 11. 26.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1.1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1. 제안이유

가.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지원을 통해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나.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피해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노동자들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1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에 따라 만료가 도래하는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2021.12.31.)을 5년간 연장(2026.12.31.)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서울시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827억 1천 2백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 8억 5천 4백만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818억 5천 8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 총 조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총 조성규모 ⓒ=ⓐ+ⓑ	2020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82,712	854	81,858

○ 기금운용규모는 201억 5천 4백만원으로, 사회적기업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융자성 사업 175억원, 사회적금융지원과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등의 비융자성 사업 17억 8천만원, 예치금 8억 5천 4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 사업내용 >

구 분		사업내용
융자성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융자>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금 등 또는 서울시 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대상 융자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우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서울시 내 사회주택을 공급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주체 대상 공사비 등을 융자 지원
	민간자산클러스터 조성	민간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공동체 소유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공간 및 협업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클러스터 공간 조성시 장기·저리 융자 지원

구 분			사업내용
	고용취약계층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 융자	사회적경제기업·비영리민간단체에 종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등 소액 융자지원
		불안정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및 자재구입비 등 소액 융자 지원
비융자성 사업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회적금융활성화를 위한 사업보조(융자금액의 2%)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소셜벤처허브센터 임대료 지급(캠코 기부금)

- 융자성 사업은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기금과 민간자금을 매칭(1:1~5:1)한 후 사회적 경제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 비융자성 사업은 ▸정부모태펀드, 민간투자기관과 함께 임팩트투자조합에 투자하는 사업, ▸융자사업비의 2%를 연동하여 수행기관의 재융자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 기금은 2020년까지 총 1,485억 5천 2백만원의 자금으로 925건의 사회적경제기업과 236명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를 지원했음.

<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융자금액	합계	148,552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19,257	27,512
	市 기금(市 수행기관)	114,984	10,900	7,488	14,612	20,664	12,350	11,100	15,850	22,020
	민간기금	33,568	10,223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5,492
지원건수	기업융자 (단위: 건)	925	59	44	81	65	170	137	127	242
	개인융자 (단위: 명)	236	-	-	-	-	-	-	-	236

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판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투자기금은 조례 제정(2012.7.30.) 이후 존속기한을 1차례 연장(2016.9.29.)한 바 있음.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정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 여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재정적 측면에서의 기금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투자기금은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중시하여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민간금융기관보다 저리로 융자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자금으로,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상의 일반적인 제약을 받는 일반회계보다는 자율적·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설치 초기에 기업신용도 평가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기업까지 융자를 지원한 결과, 융자기업의 경영악화, 파산, 회생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발생[2]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 한편,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사회투자기금의 서울시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아[3] 기금운용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전출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 경영악화 5개 기업, 폐업 2개 기업, 유동성 악화 1개 기업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총액은 1,586,817천원임(서울시 별도 제출자료)

3) 서울시는 기존 융자의 회수기간이 도래하고, 사회주택 지원 사업의 종료로 주택정책실의 사회투자기금 전출금도 미편성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1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지원을 통해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나.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피해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노동자들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7. 22.~8. 11.)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김나영(02-2133-5477)